

부천시 체육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1월 19일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)

가. 제안이유

- 시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료 중에서 농구골대, 라인기계 및 배구 지주대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적용기준을 정비하여,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부속시설 사용료를 조정함.(안 별표 6)
 - 농구골대 : 프로 및 아마추어 경기 등 공식 경기에만 적용 하도록 변경함.
 - 라인기계 : 현행 대당 1일 20,000원을 3,000원으로 하향 조정함.
 - 배구지주대 : 현행 개당 30,000원을 조당 30,000원으로 하되, 프로 및 아마경기 등 공식경기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함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공식경기도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가?	○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임.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체육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체육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6을 별지와 같이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6]

부속시설사용료(제8조 관련)

구 분		산 출 기 초
라이트시설		기본료(80,000원) + (월 기본료 × 일/30 × 사용면적) + 전기 실사용료
전기조명시설		기본료(50,000원) + (월 기본료 × 일/30 × 사용면적) + 전기 실사용료
냉·난방		기본료(50,000원) + (월 기본료 × 일/30 × 사용면적) + 실사용 전기·유류 고시가격
음향시설		기본료 60,000원 ※ 마이크 2개 사용료를 포함한 요금이며, 마이크 추가 시에는 1개당 5,000원을 부담하여야 함.
스코어판		1일 20,000원
농구골대		1일 50,000원 ※ 프로, 아마추어경기(대한농구협회 및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경기)에만 적용함.
샤 위 실		1일 1회 기본료(20,000원) + 전기사용료
전 광 관	중 합 운동장	기본료 300,000원(영상부문 및 녹화비 포함) + 전기 실사용료 · 다만,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 시에는 1회 100,000원을 추가로 징수하고, 녹화 요구 시에는 녹화비 1일 100,000원을 별도로 징수함.
	부 천 체육관	기본료 40,000원 · 다만,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 시에는 1회 100,000원을 추가 징수하고, 녹화 요구 시에는 녹화비 1일 100,000원을 별도 징수
라인기계		1대당 × 1일 3,000원(석회석 포함)
접 의 자		1개당 × 1일 500원
탁 자		1개당 × 1일 3,000원
발 언 대		1개당 × 1일 5,000원(대), 3,000원(소)
라 커 림		1실별 1일 50,000원
개 인 사 물 함		1개당 × 1일 3,000원 ※ 임대기간 경과 시에는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, 이용대상자는 정규 회원에 한함.
배구지주대		1조당 30,000원 ※ 프로, 아마추어경기(대한배구협회 및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경기)에만 적용함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기·난방 및 상·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으로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며, 계량기 등으로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월 공공요금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함. (전월 공공요금/30일) · 운영요원(전광관 조작요원 포함)은 주최 측에서 준비하여야 함. · 천연잔디축구장은 1일 3게임을 초과할 수 없음. · 천연잔디축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 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. 		

부천시 체육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62호
의결 년월일	2009. 1. 22. (제149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. 8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시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료 중에서 농구골대, 라인기계 및 배구지주대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적용기준을 정비하여,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부속시설 사용료를 조정함.(안 별표 6)
 - 농구골대 : 프로 및 아마추어 경기 등 공식 경기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함.
 - 라인기계: 현행 대당 1일 20,000원을 3,000원으로 하향 조정함.
 - 배구지주대 : 현행 개당 30,000원을 조당 30,000원으로 하되, 프로 및 아마경기 등 공식경기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함.

부천시 체육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체육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6을 별지와 같이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6]

부속시설사용료(제8조 관련)

구 분		산 출 기 초
라이트시설		기본료(80,000원) + (월 기본료 × 일/30 × 사용면적) + 전기 실사용료
전기조명시설		기본료(50,000원) + (월 기본료 × 일/30 × 사용면적) + 전기 실사용료
냉·난방		기본료(50,000원) + (월 기본료 × 일/30 × 사용면적) + 실사용 전기·유류 고시가격
음향시설		기본료 60,000원 ※ 마이크 2개 사용료를 포함한 요금이며, 마이크 추가 시에는 1개당 5,000원을 부담하여야 함.
스코어판		1일 20,000원
농구골대		1일 50,000원 ※ 프로, 아마추어경기(대한농구협회 및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경기)에만 적용함.
샤 위 실		1일 1회 기본료(20,000원) + 전기사용료
전 광 관	중 합 운동장	기본료 300,000원(영상부문 및 녹화비 포함) + 전기 실사용료 · 다만,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 시에는 1회 100,000원을 추가로 징수하고, 녹화 요구 시에는 녹화비 1일 100,000원을 별도로 징수함.
	부 천 체육관	기본료 40,000원 · 다만,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 시에는 1회 100,000원을 추가 징수하고, 녹화 요구 시에는 녹화비 1일 100,000원을 별도 징수
라인기계		1대당 × 1일 3,000원(석회석 포함)
접 의 자		1개당 × 1일 500원
탁 자		1개당 × 1일 3,000원
발 언 대		1개당 × 1일 5,000원(대), 3,000원(소)
라 커 룸		1실별 1일 50,000원
개 인 사 물 함		1개당 × 1월 3,000원 ※ 임대기간 경과 시에는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, 이용대상자는 정규 회원에 한함.
배구지주대		1조당 30,000원 ※ 프로, 아마추어경기(대한배구협회 및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경기)에만 적용함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기·난방 및 상·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으로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며, 계량기 등으로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월 공공요금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함. (전월 공공요금/30일) · 운영요원(전광관 조작요원 포함)은 주최 측에서 준비하여야 함. · 천연잔디축구장은 1일 3계임을 초과할 수 없음. · 천연잔디축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 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. 		